

# 하도급협력대금통장 (상생결제 노무비) 지급이체서비스 이용신청서

## 1. 신청기관정보

업체명			사업자번호	
주소	우편번호			
업체 담당자	부서		성명	
	TEL		F A X	

## 2. 서비스 신청 계좌

계좌번호	예금주	비고

## 3. 유의사항

- 지급이체 서비스는 (주)결제전산원과 은행간에 체결한 동반성장론(상생결제시스템) 노무비지급 업무제휴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.
- 지급이체 서비스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체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되며, 은행은 상생결제시스템으로부터 이체 의뢰 받은 내용대로 신청 계좌의 지급가능 잔액 범위 내에서 이체합니다.
- 신청계좌의 지급이체는 하도급협력대금통장(상생결제 노무비)을 통한 이체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, 창구·인터넷/스마트폰/폰뱅킹·CD/ATM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.
- 신청계좌의 지급이체시 이체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은행은 본 서비스의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기관 및 신청기관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, 폭동, 소요, 법령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및 금융당국의 정책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
  -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  -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기관 및 신청기관이 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, 기타의 사고로 협약기관 및 신청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- 협약기관 및 은행이 직접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제 3자에 의한 전산통신망의 무단 침입에 의한 해킹, 시스템 파괴,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
  - 기타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 고의,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
- 지급이체서비스는 은행의 제규정 및 거래약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이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.
  - 지급요청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지급이체 의뢰금액보다 부족한 때
  - 이체대상 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때
  - 이체대상 예금계좌가 입금정지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
  - 통신기기 및 회선의 장애, 전산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체처리를 할 수 없을 때
  - 지급요청계좌에 관하여 압류, 가압류등 인출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
  - 입금 또는 출금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예금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입금 및 출금계좌에 대하여 법적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
- 기타 유의사항은 “하도급협력대금통장 (상생결제 노무비)” 특약 및 상품설명서와 원화편뱅킹서비스계약에 따릅니다.

위와 같이 하도급협력대금통장(상생결제 노무비)의 지급이체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징구 서류	법인	■ 공통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■ 대표자 신청 시: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■ 대리인 신청 시: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
	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(※대리인 신청불가)

년 월 일

(신청인) 신청기관명 : (인)

